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589
----------	-------

발의연월일 : 2023. 9. 21.

발의자 : 신현영 · 강민정 · 윤영덕  
진성준 · 김경만 · 정일영  
장경태 · 이성만 · 허종식  
정태호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8년 대비 2022년 남성 난임 환자 수가 약 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자기증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음.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난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규정과 실비 지급 기준만 있고, 정자 기증자에 대한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정자 기증자에 대하여도 난자 기증자와 동등하게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7조).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 제목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난자를”을 “난자 및 정자(이하 이 조에서 “생식세포”라 한다)를”로, “난자 기증자”를 “생식세포 기증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난자”를 “생식세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난자”를 각각 “생식세포”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7조(<u>난자</u> 기증자의 보호 등)</p> <p>①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난자를 채취하기 전에 <u>난자 기증자</u>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하여야 한다.</p> <p>②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건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으로부터 <u>난자</u>를 채취하여서는 아니된다.</p> <p>③ (생 략)</p> <p>④ 배아생성의료기관은 <u>난자</u> 기증에 필요한 시술 및 회복에 걸리는 시간에 따른 보상금 및 교통비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항목에 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u>난자</u> 기증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p>	<p>제27조(<u>생식세포</u> 기증자의 보호 등) ① ----- ----- <u>난자</u> 및 정자(이하 이 조에서 “<u>생식세포</u>”라 한다)를 ----- --<u>생식세포</u> 기증자----- -----. ② ----- ----- ----- --<u>생식세포</u>----- ---. ③ (현행과 같음) ④ -----<u>생식세포</u>----- ----- ----- ----- -----<u>생식세포</u>-----.</p>